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26886
등록일자	2014.12.26.
결재일자	2014.12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활용팀장	청소행정과장	환경도시국장	
지운희	김천배	오문식	12/29 여장권	
협 조				

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
향후 공간 활용 계획



서대문구
청소행정과

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향후 공간 활용 계획

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신관 2층 일부(66m²)에 입점해 있는 녹색가게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이전 사용자였던 재활용센터가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

1

녹색가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

- 최초 입점일자 : 2012. 1. 16.
- 소재지 : 연희로 292, 재활용센터 신관 2층
- 사용자 :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(대표 : 유병연)
- 사용목적 : 중고 생활용품, 의류 등 판매·교환 매장 운영
- 사용허가기간 : 2014. 1. 1. ~ 2016. 12. 31.(3년)
- 사용허가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
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 (시설비등의 지원)
- 사용허가 취소 신청 이유 : 사용료 인상
 - ☞ 녹색가게의 운영주체인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가 2014. 9. 30일자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015년도 사용료 산정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7조에 의거 대부요율이 10/1000에서 50/1000으로 상향 조정됨



녹색가게 외부



녹색가게 내부

2

재활용센터 신관 현황

- 소재지 : 연희로 292 (홍은동 425 외 3필지)
- 구 조 : 지상 3층, 경량철골조, 샌드위치 판넬 (시유지 / 구유건물)
- 준공일자 : 2002. 6. 7.
- 건물 사용 현황

구 분	사용 현황		
	사용 주체	사용 면적	사용 용도
3층	재활용센터	218.11㎡	전시 매장
2층	재활용센터	151.36㎡	전시 매장
	녹색가게	66㎡	
1층	- 바르게살기운동서대문구협의회 - 한국자유총연맹서대문구지회 - 6.25참전유공자회 - 서대문기초푸드뱅크	265㎡	사무실

3

공간 활용 계획

- 사 용 자 :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대표 조봉현
- 사용기간 : 2015. 1. 2. ~ 2015. 4. 30. (4개월간)
 - ☞ 現 재활용센터 운영자와의 위·수탁계약기간이 2015. 4. 30일자로 만료됨
- 공간 사용에 따른 칸막이 벽 철거 등 부대공사비용은 재활용센터가 부담함 (구 예산 지출 없음)

공사내역	규격	단위	수량
샌드위치판넬 철거	900×3000	개	13
핸드레일 철거 및 보수		인	2
폐기물 처리	유리, 판넬 외	식	1

- 해당 공간은 재활용센터 신관 건물을 신축한 이래로 녹색가게 입점 전까지 재활용센터가 사용하였음

4

사용료 산정 및 부과

- 산정기간 : 2015. 1월 ~ 4월 (4개월)
- 부과금액 : 310,980원
 - 산출내역 : 연간 사용료 932,940원/12개월 × 4개월
 - 토지분 : 754,740원, 건물분 : 178,200원
 - 귀속수입구분

구 수 입	555,570원 (토지대부료 × 50% + 건물대부료)
시 수 입	377,370원 (토지대부료 × 50%)

※ 토지(시유지)대부료의 50/100은 구수입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1호

- 납부기간 : 사용 개시일 이전

□ 산정기준

- 토지사용료 산출근거 : $[\{(토지전체면적 \times 공시지가) / 3\} \times 0.01] \times 30\%$

┌ 지상 3층 건물에서 지상 2층은 부지평가액의 1/3

└ 토지대부요율 10/1000 (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5항)

└ 사용부지면적은 전체면적의 30% (77.3m²)

- 건물사용료 산출근거 : $\{건물사용면적 \times 감정평가금액(단가)\} \times 0.01$

┌ 건물사용면적 : 66m²

└ 건물대부요율 10/1000 (사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7조 제4항)

□ 기타사항

- 2007. 1.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사용료 공급가액의 10%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 부과됨

붙 임 : 사용료 산출조서 1부. 끝.